

부산지방법원 2020. 8. 25 선고 2020가단4511 판결 [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]

재판경과

부산지방법원 2022. 4. 13 선고 2020나59185 판결

부산지방법원 2020. 8. 25 선고 2020가단4511 판결

전 문

원 고 A

피 고 1. B

변론 종결 2020. 7. 21

판결 선고 2020. 8. 25

주 문

1.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.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부산 기장군 D 임야 4,166㎡에 관하여 원고에게, 피고 B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등기와 2010. 9.

9. 접수 제828기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, 피고 C는 위 등기와 2018.12. 18. 접수 제85663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 각 2019. 5. 14. 해지를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E은 부산 기장군 F리(이하 'F리'라고만 한다) G 임야 35,733㎡ 중 5653/35733지분에 관하여 2008. 12. 16.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, 위 임야 중 4992/5653 지분에관하여 2009. 1. 19. 매매를 원인으로 원고에게 2009. 1. 20.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.

한편,표은 위 임야 5653/35733지분에 관하여 2010. 9. 8. 설정계약을 원인으로,채권최고액 200,000,000, 채무자 E, 근저당권자 피고 B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(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등기와 2010. 9. 9. 접수 제828기호. 이하 '이 사건 제1근저당권등기')를 마쳤다.

나. 원고는 G 임야의 공유자들인 E, H, I, J을 상대로 공유물분할 청구의 소를 제기 하여, 위 임야 중 4,827㎡ 부분을 원고 4166 /4827 지분과 E을 661/4827 지분의 공유로 분할하는 판결(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. 1. 16. 선고 2013가단18686판결)이 선고되었고,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.

위 확정판결에 따라 2016. 5. 24. D 임야4, 166㎡가 G임야에서 분할되었고, E은 D임야중 5653/35733지분 및20428866/172483191지분에 관하여 2018. 12. 18. 설정계약을 원인으로, 채권최고액300,000,000원,채무자 E, 근저당권자 피고 C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(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. 12. 18. 접수 제85663호. 이하 '이 사건 제2근저당권등기')를 마쳤다.

다. E은 원고를 상대로 D 임야에 관한 공유물분할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, 위 임야 중 661㎡를 E의 소유로,4,165㎡를 원고의 소유로 분할하는 판결(부산지방법원 2019.5. 14. 선고 2017가단20667판결)이 선고되어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.

위 확정판결에 따라 D 임야 중 4,166㎡는 원고의 단독소유로, D 임야에서 분할된 K 임야 661㎡는

E의 단독소유로 각 등기절차가 마쳐졌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내지 4호증(가지번호 포함)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판단

가. 청구원인

이 사건 청구원인의 취지는, 원고가 공유물분할을 통해 D 임야의 단독소유자가 되었으므로, 위 임야에 관하여 설정된 이 사건 제1,2근저당권등기는 말소되어야 하는바, 피고들은 원고에게 공유물분할 판결 선고일인 2019. 5. 14. 해지를 원인으로 위 각근저당권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는 것으로 보인다.

나. 판단

갑, 을의 공유인 부동산 중 갑의 지분위에 설정된 근저당권 등 담보물권은 특단의합의가 없는 한 공유물분할이 된 뒤에도 종전의 지분비율대로 공유물 전부의 위에 그대로 존속하는 것인바(대법원 1989. 8. 8. 선고 88다카24868판결, 대법원 1993. 1. 19. 선고 92다30603판결), 원고가 공유물분할에 따라 D 임야의 단독소유자가 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근저당권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,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.

3. 결론

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.

판사 정은영